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 작성 예시

가상 청구서 본문·별지·독자 설명을 분리한 휴대폰용 읽기본

이 예시가 전제하는 사건

피상속인 김한결은 2026년 1월에 사망했다고 가정합니다. 배우자는 먼저 사망했고 성년 자녀 김가람(청구인)과 김다온(상대방)만 공동상속인입니다. 다른 상속인, 유언, 상속포기, 특별수익, 기여분, 채무가 없고 피상속인 단독 소유의 부동산 한 건만 분할 대상이라고 가정합니다. 두 사람이 분할 협의에 이르지 못한 **가상 사건**의 심판청구 문안을 보여 줍니다. 실제 사건에서 조정을 먼저 신청할지,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뒤 심판절차로 이행되는지, 별도 청구서 제출이 필요한지는 사건 기록과 법원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. 이 PDF에는 조정 기록이나 실제 증명서·평가자료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. 2026년 9월 30일이라는 **가상 평가일**의 잠정 가액을 100,000,000원으로 놓고, 김가람의 단독 취득과 김다온에게 50,000,000원 정산을 희망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. 이는 법원의 실제 평가액·분할방법·정산금이 아닙니다.

아래 `[가상 주소]`, `[가상 토지]`, `[관할 법원]`은 실제 주소·등기기록·법원명이 아닙니다. 제출할 때 이 예시를 복사하지 말고 사건의 공적 서류와 절차 기록에 맞춰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.

청구서 문안 예시 - 아래 구역만 가상 제출문안

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

청구인 김가람 / 주소: [가상 주소: 서울특별시 예시구 가상로 10] / 연락처·등록기준지: [실제 제출 시 확인]

상대방 김다온 / 주소: [가상 주소: 서울특별시 예시구 가상로 20]

피상속인 망 김한결 / 최후 주소: [가상 주소: 서울특별시 예시구 가상로 30] / 등록기준지: [실제 제출 시 확인] / 사망: 2026년 1월 [가상 날짜]

청구취지

1. 별지 1 상속재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 김가람의 소유로 분할한다.

2. 청구인 김가람은 상대방 김다온에게 정산금 50,000,000원을 지급한다.

3. 심판비용의 부담은 법원이 정한다.

청구원인

1. **상속관계.** 피상속인 망 김한결의 사망으로 성년 자녀인 청구인과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.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고, 이 예시에서 확인되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없습니다. 두 사람의 법정상속분은 이 가상 사실관계에서 각 2분의 1입니다.

2. **분할 대상.**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은 별지 1 상속재산 목록과 같습니다. 별지의 표시는 이 예시를 위해 가상의 등기기록을 상정한 것입니다.

3. **협의와 조정 경과.** 청구인과 상대방은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을 협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습니다. [실제 제출 시 조정 신청·회부·성립 여부와 심판 이행 기록을 확인하여 기재. 이 예시는 별도 청구서 재제출을 전제하지 않음]

4. **희망 분할방법.**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구합니다. 2026년 9월 30일이라는 가상 평가일의 잠정 가액은 100,000,000원이므로, 이 가상 전제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정산금은 50,000,000원입니다.

첨부자료 기재란 예시 - 이 PDF에는 아래 증명서·기록이 실제로 첨부되지 않음

1. 피상속인의 사망 및 청구인·상대방의 상속관계를 확인할 공적 증명서류 [실제 발급 문서명·발급일 확인]

2. 별지 1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표시를 대조할 자료 [실제 문서명·발급일 확인]

3. 부동산 가액과 정산금 지급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[실제 자료명·작성일 확인]

4. 협의 경과를 확인할 자료 및 조정 절차가 있었던 경우 그 진행·결과를 확인할 자료 [실제 사건의 자료명, 해당할 때에만 조정 사건번호·결과·날짜 확인]

법원 공개 양식의 청구인·상대방·피상속인 기재란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도 있습니다. 이 교육용 예시에는 실제 개인정보를 싣지 않았으며, 제출용 문서에는 사건의 공적 증명서류와 접수 방식에 맞춰 해당 기재란을 확인해야 합니다. 법원 양식에 열거된 특별연고 관계·상속재산관리인 선임·상속인 수색공고 관련 자료는 이 가상 사건에 모두 필요한 서류라는 뜻이 아닙니다.

2026년 [가상 월] [가상 일]

청구인 김가람 (서명 또는 날인)

[관할 확인 후 기재할 가정법원] 귀중

별지 1 - 상속재산 목록(가상)

재산 1

재산의 표시: [가상 토지] 서울특별시 예시구 가상동 10-1, 지목 대, 면적 200㎡

피상속인 명의·범위: 망 김한결 단독 소유 전부

이 예시에서 참고한 가액: 2026. 9. 30.자 **가상 평가자료**의 잠정 가액 100,000,000원

독자 설명 - 위 가상 청구서의 일부가 아님

- **먼저 절차를 확인:** 상속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,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 전에 조정 신청을 요구합니다. 바로 심판을 청구했다면 법원의 조정회부와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.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의 심판 이행 경로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며, 이 예시가 별도 심판청구서 재제출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**사람과 재산을 정확히 특정:** 가사소송규칙 제114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성명·주소, 공동상속인 중 증여·유증받은 자가 있으면 그 내용, 상속재산 목록을 검토합니다. 이 예시에서는 증여·유증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. 상속인의 수·자격이나 특별수익·기여분이 다르면 이 단순 분할안과 정산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 미성년 상속인은 대리·절차를, 채무는 승계·부담 관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.
- **가상 표시를 실제 증거에 맞추기:** 실제 부동산 표시와 소유 지분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. 부동산 외 재산은 재산별로 분할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하는 것만 목록에 적습니다.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귀속되고, 특별한 사정에서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표의 주소와 토지 표시는 실재하는 등기기록이 아닙니다.
- **정산금은 결과 보장이 아님:** 50,000,000원은 가상 평가자료와 두 사람의 단순한 가정으로 만든 청구인의 희망안입니다. 구체적 상속분, 심판에서 채택되는 분할방법, 분할 대상의 가치와 정산액은 실제 심리·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임의 이율이나 지급기한을 이 예시에 추가하지 않았습니다.

- **제출 전 대조:**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관할 법원, 실제 조정 기록, 이해관계인 전원, 재산 표시·가액 자료, 필요한 첨부·인지·송달료, 청구인 서명/날인 방식은 접수 시점의 법원 안내와 확인합니다. 조정 없이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회부와 예외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. 법원 공개 양식의 당사자·피상속인·청구취지·원인·첨부서류·상속인 목록·재산 목록 칸과 이 예시의 구성을 대조했지만, 이 PDF가 그 공식 양식의 모든 칸을 복제하거나 그대로 제출할 수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. 법원 공개 파일 뒤쪽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예시는 별도 자료이므로 이 가상 심판청구에 당연히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읽지 않습니다.

공식 근거·검토 범위

- 가사소송규칙 제114조(상속재산의 분할청구) (www.law.go.kr)
- 가사소송법 제46조(관할) (www.law.go.kr)
- 가사소송법 제50조(조정 전치주의) (www.law.go.kr)
- 민법 제1009조 제1항(동순위 상속인의 균분) (www.law.go.kr)
- 민법 제1013조(협의에 의한 분할, 분할청구) (www.law.go.kr)
-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(차액 현금 정산 가능성) (www.law.go.kr)
- 대법원 2022. 6. 30. 자 2017스98 등(분할 방법·구체적 상속분) (www.law.go.kr)
- 대법원 2025. 3. 24. 자 2024스866 등(가분채권의 원칙과 예외) (www.law.go.kr)
-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`[가사]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서`(공개 PDF 5쪽, 2026-10-04 대조) (jifi.scourt.go.kr)